

大阪韓国商工会議所와 LA 韓人商工会議所간 協力議定書

大阪韓国商工会議所(Korea Chamber of Commerce & Industry Osaka 이하, “大阪韓商”)와 LA 韓人商工会議所(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, 이하 “LA 商議”)는 所屬 企業의 發展과 大阪 및 LA 地域과의 사이에 經濟交流 및 理解의 增進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協力議定書を 締結한다.

第1条 (目的)

이 協力議定書는 大阪韓商와 LA 商議간의 交流와 理解를 增進하고 相互 業務協力에 관한 事項을 결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条 (協力の 内容 및 範圍)

- 1) 大阪韓商와 LA 商議는 각 機關이 保有하는 大阪와 LA 地域의 貿易 振興 및 經濟協力에 관한 情報를 相互 提供한다.
- 2) 大阪韓商와 LA 商議는 각 機關이 施行하는 會議의 開催、使節團의 派遣 및 영접, LA 또는 大阪地域에 進出한 企業에 대한 支援, 調査 및 研究, 研修등의 事業에 관하여 相互 協力한다.
- 3) 大阪韓商와 LA 商議는 각 機關이 發行하는 刊行物 및 各種 資料를 相互 提供한다.
- 4) 大阪韓商와 LA 商議는 所屬 商工会議所를 통하여 交流·協력이 增進 되도록 相互 協助한다.
- 5) 大阪韓商와 LA 商議는 所屬 企業에 대하여 상대방의 事業을 積極的으로 알림으로써 所屬 企業이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.
- 6) 大阪韓商와 LA 商議는 第1項 내지 第5項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관하여도, 이 議定書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 상호 最大限 協力한다.

第3条 (費用의 負擔)

大阪韓商와 LA 商議는 第2項의 協力を 위해 必要的 費用을 各自 負擔한다. 다만, 別途의 費用이 所要되는 경우, 兩 機關이 協議하여 別途로 정한다.

第4条 (細部事項)

이 議定書를 實行하기 위하여 必要的 細部事項은 兩 機關이 協議하여 別途로 정한다.

第5条 (有効期間)

이 議定書의 有効期間은 2年으로 한다. 다만, 有効期間 滿了日까지 어느 一方이 書面에 의하여 議定書의 變更을 要求하거나 解除하지 않는 경우 2年間씩 延長되는 것으로 한다.

第6条 (効力の 發生)

이 議定書는 兩 機關의 代表者또는 代理人이 署名한 날 부터 効력이 發生한다.

第7条 (議定書의 保管)

이 議定書는 韓國語와 日本語로 각각 2部를 作成하여 相互 署名한 후 각각 1部씩 保管한다.

2009年 10月 28日

大阪 韓國商工會議所
會長 金 友 三

L A 韓人商工會議所
會長 明 源 植